



제품안전관리, 내년부터 확 바뀐다!

제품안전에 대한 종합적관리 법률인 '제품안전기본법'이 내년부터 시행된다.

개요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「제품안전기본법」이 금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업체, 학계, 소비자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7월 28일 개최하였다.



- 그간 제품안전관리는 제품의 제조·출하 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하였으며, 제품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및 수거·파기 등을 위한 행정조치가 미흡하였으나,
 - 「제품안전기본법」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어, 리콜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 - ※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99년도와 2007년도에 소비생활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하였으며, 자동차 및 식품 등을 제외한 생활제품에 대하여 '09년 한해에만 미국이 465건, 일본이 156건의 리콜을 실시

변화된 제품안전관리 체계

- 위험성이 경미한 사항은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 수거 등

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게 된다.

- 또한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.



-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, 사업자가 자진 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강제적 리콜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토록 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.

- 아울러 제품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고·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제품안전관리 전담기관 “한국제품안전협회” 출범

- 그 밖에 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‘제품안전사고 조사단’을 운영하고, 현재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새롭게 출범시켜 명실공히 제품안전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.
- 또한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,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에 대한 R&D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책도 펴나갈 방침이다.
- 기술표준원은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각계의 의견을 검토·수렴하고,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「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, 시행규칙」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.